

고용직임용규정

개정 : 2012. 9. 24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경희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고용직 직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고용직 직원이라 함은 학교법인 경희학원 정관 [별표2]에 규정된 행정직원을 말한다.

제3조(임용권자) 고용직 직원의 임용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에 의거하여 법인 이사장이 임용 한다.

제4조(신규임용) ① 고용직 직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,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경우 이를 우대할 수 있다.

② 신규 임용시 경력인정은 군경력만을 인정하되 적용방법은 직원임용규정을 준용한다.

제5조(임용제한) 본교의 직원임용규정 제11조(결격사유)에 해당하는 자는 고용직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.

제6조(복무) 고용직 직원의 복무는 직원복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7조(근무상한연령) 고용직 직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만 50세로 한다.

제8조(보수) 고용직 직원의 보수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9조(준용) 본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2. (경과조치) ① 2004년 12월 1일 현재 고용직으로 재직중인자 중 40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5년간 정년 유예기간을 둔다

부 칙

1. 본 규정은 2012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.